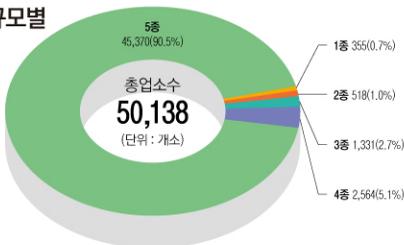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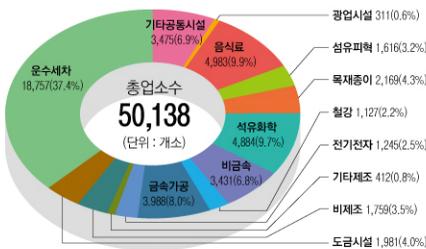
# 폐수처리시설이란?

공장이나 산업단지 등의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공정을 통해 깨끗한 물로 정화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을 뜻합니다.

전국 사업장 규모별 폐수배출업소 현황 (2012년 기준)



전국 업종별 폐수배출업소 현황 (2012년 기준)



# 환경기술지원 문의

구분	담당부처	연락처
서울특별시	물재생시설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	02-2133-3849 02-2210-5067
인천광역시	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	032-835-4373
부산광역시	부산시청 환경보전과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	051-888-4965 051-621-7325
대구광역시	대구시청 물관리과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	053-803-4312 053-580-6291
대전광역시	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	042-822-6930
광주광역시	광주시청 환경정책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	062-613-4156 062-530-3990
울산광역시	울산시청 환경관리과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	052-229-3190 052-259-2650
경기도	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	031-8008-3454 031-336-1438
강원도	강원도청 환경정책과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	033-249-2243 033-250-7325
충청북도	충북환경보전협회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	043-231-9578 043-841-5782
충청남도	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	042-486-8057 041-540-5393
경상북도	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	053-810-4744
경상남도	경남도청 수질관리과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	055-211-4224 055-213-2768
전라북도	전북도청 환경보전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	063-280-3513 063-270-4824
전라남도	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	061-659-6782
제주특별자치도	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	064-754-2319
한강유역환경청	환경감시단	031-790-2510
낙동강유역환경청	환경감시단	055-211-1333
금강유역환경청	환경감시단	042-865-0876
영산강유역환경청	환경감시단	062-410-5136
대구지방환경청	환경감시과	053-230-6553
새만금지방환경청	환경감시팀	063-270-1867

희망의 새시대

# 폐수배출시설 정상화를 위한 환경기술지원 제도

정부는 『부패방지종합대책』의 일환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업체의 환경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기술지원을 통한 환경문제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
## 환경기술지원제도 환경 홈-닥터란?

기업체의 생산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·저감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도록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### 지원 대상

-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시설개선 및 운영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업체
-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, 저감하고자 또는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,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
-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은 업체
- 관할 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한 업체
-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 등

## 지원내용 및 방법

- 기업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·처리에 관련된 애로 사항에 대한 현장기술지원 및 상담지원 실시

### 현장기술지원

-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·개선관련 기술지원
- 오염물질처리시설 개선·운영에 관한 기술지원
- 환경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 교육·훈련
-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·처리에 관련된 기술지원

### 상담지원

- 환경관련 인·허가제도 및 금융·재정제도에 관한 정보제공
- 환경친화기업제도,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 등의 환경시책에 대한 정보제공

- 대상업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(practical) 지원 실시

- 기존 설비의 효율적인 활용방법과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등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도, 최후에 설비투자 권유

- 기업환경지원사업 차원에서 무상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실비 수준 징수

- 기술수당, 여비, 실험·분석비, 보고서 인쇄비 등의 활동비 무상지원
- 실험·분석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경우 참여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실비 징수

## 환경기술지원 수행절차

- 1 기술지원 신청(업체 → 지자체(지원센터)) ▶
- 2 예비진단 ▶
- 3 대상업체 선정 ▶
- 4 전담지원팀 지정 ▶
- 5 협약체결(지자체(지원센터)-업체) ▶
- 6 현장기술지원 실시 ▶
- 7 현장기술결과 보고 ▶
- 8 사후관리



## 환경산업 금융·컨설팅 지원 제도

### 지원 내용

#### 방지시설 적정 운영 컨설팅

- 폐수 배출시설 적정 운영방법에 대해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자문 실시(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컨설팅 실시)

#### 방지시설 개선 금융 지원

- 폐수 처리시설 설치·보수 등 환경 개선비용을 장기·저리(2014년의 경우 7년 이내, 금리 2.87%)로 융자

#### 환경산업 육성 지원제도 안내

-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, 환경기술개발사업(R&D) 등의 환경기업 지원제도 안내

### 연락처

#### 방지시설 적정 운영 컨설팅, 환경산업 육성 지원제도 안내
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(02-380-0236)

#### 방지시설 개선 금융 지원
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(02-380-0259~2)

